

해양수산부령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연 월 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영업
별로 검사실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, 검사
장비의 임차 가능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공통
되는 검사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([별표2], [별표7])
- 나.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
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([별표2], [별표7]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생략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전
3) 행정규제 심사 전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7호나목의 “검사장비”를 “검사장비(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).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같은 사업자가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검사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별표 7 제2호나목의 “검사장비”를 “검사장비(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).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같은 사업자가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검사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